

서울특별시의회  
제298회 정례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서울특별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962호)

제안설명



2020. 12. 18.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김호평

(더불어민주당 광진구 제3선거구,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위원)

존경하는 김희걸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광진구 제3선거구

김호평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 발의한

「서울특별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비상용수 공급용 지하저수조 확보용량과 관련하여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2014.10.28.)됨에 따라,

지역별 상수도 시설용량 및 세대당 수돗물 사용량 등을 고려, 공동주택 지하저수조 용량 확보 기준을 기존 조례보다 완화하여 적용하고자 발의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의원이 발의한 대로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